

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(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
1.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

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	대리자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(선장·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)일 것 나.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(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·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이수한 날부터 5년(교육·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6년)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	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(선장·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)일 것

2.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

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	대리자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공학기사, 해양자원개발기사, 해양환경기사, 해양조사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-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나. 법 제121조제2호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(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·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)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공학기사, 해양자원개발기사, 해양환경기사, 해양조사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.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